

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
1. 시·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  
· 도세(화력발전·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,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)의 총액

## 2. (생 략)

## ② (생 략)

③ 시·도지사는 화력발전·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·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시·군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.

1. 화력발전 · 원자력발전에 대한  
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 
해당하는 금액(「지방세징수  
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  
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 
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: 화  
력발전소 ·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 
시 · 군

## 2. (생략)

----- .

# 1. ----- ----- 화력발전 · 원자력발전 및 「지방세법」 제142조제2항제2 호 라목의 폐기물----- -----

## 2. (현행과 같음)

##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화력발전·원자  
력발전 및 폐기물(「지방세법」  
제142조제2항제2호 라목의 폐기  
물을 의미한다. 이하 같다)-----

## 1. 화력발전 · 원자력발전 및 폐기물

----- 화력 발전소

• 원자력 발전소 및 폐기물 매립 시설(「지방세법」 제142조 제2항 제2호)의 폐기물 매립 시설을 의미한다. 이하 같다)이 ---

## 2. (현행과 같음)